

대구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가단1300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구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경우, 양상열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박현미

변론 종결2021. 2. 17.

판결 선고2021. 3. 17.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7,523,024원 및 그 중 17,522,965원에 대하여 2020. 8. 6.부터 2020. 10.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피고 A 부분)

2. 피고 B 부분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20. 1.

7. 체결된 증여계약을 17,523,0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7,523,0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8. 8. 20.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함)과 20,000,000원의 일반
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8. 1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피고 A가 대출받을 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서를 C은행에
발급하였다.

- 다 음 -

(가) 보증번호: D

(나) 보증금액 : 20,000,000원

(다) 보증기한 : 2023. 8. 16.

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위 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보증부대출의 원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C은행의 보증부대출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원고의 정관 및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것의 합계액을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재단정관이 정한 손해금율은 2018. 1. 1.부터 연 10%이다.

다. 피고 A가 2020. 3. 17.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20. 8. 6. C은행에 위 약정과 관련하여 17,729,8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20. 8. 6.부터 2020. 8. 7.까지 2회에 걸쳐 피고 A로부터 위 약정과 관련하여 총 206,896원을 회수하였고, 이때부터 위 약정의 대위변제잔금은 17,522,965원(= 대위변제금 17,729,861원 - 회수금 206,896원)이 되었다. 위 회수금에 대하여 위 회수시까지 앞에서 본 손해금율에 따라 59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A에게 청구할 구상금 채권 총액은 17,523,024원(= 대위변제잔금 17,522,965원 + 확정손해금 59원)이 된다.

라.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7. 피고 B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7. 접수 제2613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증여계약 체결 무렵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여계약은 위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피고들은 2010. 12.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E(F생), G(H생)을 두고 있다. 피고들은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2020. 3. 26. 이혼신고를 하였다. 이혼 당시 자녀들의 양육은 피고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피고 A에게 증여된 것이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7. 임차인 I와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천만원, 근저당권자 J으로 된 근저당권이 2019. 8. 27.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B은 2020. 1. 6. K은행에서 신용대출 1,000만 원, L에서 보험약관 대출 943만 원을 받아 같은 날 J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피고 B이 이후에 갚기로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 앞으로 이전하는 날 J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1.경 시세는 2억 4,500만 원(원고 주장에 따르면 2억 8,500만 원) 정도인데,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채무도 함께 부담하게 된 점, J에 대한 채무를 위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도 책임지기로 함에 따라 부담한 3천만 원을 공제하면, 원고 주장에 따른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가 위 증여로 취득한 금액은 5,500만 원 정도이다. 피고 B은 2013년경부터 대학교 시간강사로 재직하면서 번 수입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들의 이혼 기간, 이혼 후 피고 B이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이외에도 위 이혼의 귀책사유는 피고 A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¹⁾)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거] 을 제1 내지 12호증,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가. 피고 A 부분 : 원고 청구 인용

나. 피고 B 부분 : 원고 청구 기각

판사김형한

별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